



경기도의회 제393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7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의안번호 제82번

2026. 9. 7.(월)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2027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제 출 자 : 경기도지사
- 제 출 일 : 2026년 8월 20일
- 회 부 일 : 2026년 8월 26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여성·가족·돌봄 분야의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고 특히 저출생·돌봄 공백, 여성의 경제활동 및 안전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비·사업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연하고자 함.
- 202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출연대상) 재단법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재단법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설립일자) 2004.12.30. ※'20.12.1 명칭변경(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기구/정원) 3실 / 정원75명(일반직 58, 공무원17) ※ 정원 외 인력 82명 별도 ('26.8월기준)
- (임 원) 13명(이사장 1, 대표이사 직무대행 1, 이사 9, 감사 2)
- (주요기능) 여성·가족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

- (출연규모) 2027년 출연금 9,844백만원 (① + ②)
- (출연내용) 재단의 기관운영 위한 일반관리비와 고유목적사업 수행위한 사업비 지원
 - ① 일반관리비 : 8,912백만원 (인력운영경비 5,414백만원, 기관운영경비 3,498백만원)
 - ② 고유목적사업비 : 932백만원 (정책개발 541백만원, 교육 297백만원, 대외홍보 94백만원)

3. 출연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재단이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검토의견

- 2027년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도에서 부담하는 출연금(9,844백만원)을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 편성 사전절차의 일환으로써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이번 동의안 의결로 출연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만 결정됨. 출자·출연은 자치단체장이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출연금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임.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653('15.10.19)]

- 동의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7년도 출연예정 금액은 98억 4,400만원으로 2026년(전년) 예산(98억 8,100만원) 대비 3,700만원 감액된 규모임.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출 연 금		증감	세부내역
	27년	26년		
출 연 금 소 계	9,844	9,881	△37	
일 반 관 리 비	8,912	8,970	△58	
인 력 운 영 경 비	5,414	5,091	323	○인건비(정원 75명+계약직 5명)
기 관 운 영 경 비	3,498	3,879	△381	○기관운영비 (관리비, 임차료, 공공요금 등)
고유목적사업비(17개)	932	911	21	
정 책 개 발 사 업 (8 개)	541	511	30	• 과제연구비, 연구성과 확산사업 • 연구기획관리(연구수요조사, 워크숍, 평가 등)
교 육 사 업 (4 개)	297	292	5	• 가족교육사업 • 성평등교육사업
대 외 홍 보 사 업 (5 개)	94	108	△14	• 온라인 홍보(온라인콘텐츠 제작 등) • 네트워크운영사업

- 2027년 출연금은 인력운영경비 3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관운영경비는 재단의 이천시 이전 이후 실제 사무실 사용료가 예측보다 줄어든 부분이 반영되어 3억 8,100만원 감액되었으며, 고유목적사업비는 정책개발사업비와 교육사업비가 소폭 증액되고 대외홍보사업비는 소폭 감액되어 총 2,100만원 증액됨.
- 세부사업별 금액을 포함한 출연금의 전체 규모는 2027년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 시(26년 11월 ~ 12월) 사업실적평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정 및 확정할 사항임.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 「양성평등기본법」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7조 (출연금 등의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출연을 위한 법적요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 동 조례 제5조(사업)¹⁾에 따라 경기도 여성가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연구·개발 및 성평등·가족교육 사업 추진 등은 여성가족재단의 설립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출연금 지원으로써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재단은 경기도 여성, 가족, 보육, 저출생 및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 △여성가족관련 제반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여성가족분야 동향분석·이슈 발굴,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역사회 성평등 기반 강화 및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사업 △사각지대 없는 젠더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및 예방 인식 확산 사업 △가족친화 문화 확산 및 경기도형 아동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의 저출생 대응, 돌봄 공백 해소, 젠더폭력 예방 및 성평등 가치 확산 등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한 재단의 다양한 여성가족 정책 개발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사업) 여성가족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 가족, 보육, 저출생 및 아동·청소년정책(이하 “여성정책 등”이라 한다) 연구개발
2. 성(性) 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여성의 리더십 향상, 양성평등 및 인터넷 교육과정 운영
5. 도 내 여성관련 기관 지원 및 연계망 구축
6.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7. 여성정책 등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8. 여성정책 등 관련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참고 1

2027년도 출연금 세부내역

○ 출연금 9,844백만원('27년 본예산 요구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7년 출연금 (A)	'26년 출연금 (B)	증감 (A-B)	'27년 출연금 세부내역
계		9,844	9,881	△37	
일반관리비		8,912	8,970	△58	
	인력운영경비	5,414	5,091	323	○ 인건비(정원 75명+계약직 5명)
	기관운영경비	3,498	3,879	△381	○ 기관운영비 (관리비, 임차료, 공공요금 등)
고유목적사업비		932	911	21	
정책개발 사업 (541백만원)	과제연구비	329	299	30	○ 정책과제(30건)
	이슈분석 및 통계 인사이트 발간	34	34	-	○ 이슈분석 및 통계인사이트(30건)
	보고서 제작 및 배포	35	35	-	○ 사무관리비(보고서 인쇄 등)
	연구기획관리	55	55	-	○ 연구수요조사, 워크숍, 평가 등
	연구성과 확산사업	64	64	-	○ 경기GPS 10회
	연구자료 관리 및 지원	20	19	1	○ 표절감사시스템 학술저널 구독료 등
	연구부대사업지원	-	1	△1	○ 연구자료 관리 및 지원으로 통합
	IRB운영	4	4	-	○ 연구참여자 권리안전 보호를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운영
교육 사업 (297백만원)	성평등교육사업	118	109	9	○ 경기도성인지교육워킹그룹, 도민플러스+성인지교육 등
	가족교육사업	143	143	-	○ 아동권리증진사업, 남성양육자 지원사업 등
	전략사업	16	20	△4	○ 교육사업 포털시스템, 여성전문가 DB 운영 등
	성별영향평가사업	20	20	-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컨설팅 등
대외홍보 사업 (94백만원)	네트워크운영사업	24	38	△14	○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등 유관기관 간담회 등
	영상콘텐츠사업	-	14	△14	○ 온라인 홍보와 통합
	오프라인 홍보	19	19	-	○ 도내 주요매체 언론홍보 등
	온라인 홍보	44	30	14	○ 온라인콘텐츠 제작 등
	홍보아카이브지원	7	7	-	○ 재단 주요행사 촬영(36회)

※ 향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성 있음